

의료보수표 - 비급여 항목

2025-04-01

종분류	소분류	진료비용 항목		진료비용 등(단위: 원)					특이사항	최종 변경일	
		코드	명칭	구분	비용	최저 비용	최대 비용	치료재료대 포함여부			약제비 포함여부
상급병실료	1인실	ABZ010001	1인실		150,000	0	0			1일당	2024-10-01
	2인실	ABZ020001	2인실		100,000	0	0			1일당	2023-09-01
	3인실	ABZ030001	3인실		50,000	0	0			1일당	2023-09-01
영양제		678900850	콤비 375ml		80,000	0	0	포함	포함	pack	2023-09-01
		645104652	아르믹스주250ml		70,000	0	0	포함	포함	pack	2024-07-25
			종합비타민(Vit C : 10g)		75,000	0	0	포함	포함		2023-09-01
			종합비타민(Vit C : 20g)고농축		150,000			포함	포함		2025-03-21
			종합미네랄(5종)		75,000	0	0	포함	포함		2023-09-01
약제		643601401	유락신연고(크로타미돈)_ (5g/50g)		5,000	0	0				2025-03-01
		659900050	로와콜연질캡셀		715	0	0			1C	2025-04-01
		643900900	엑티피드정		100	0	0			1T	2025-04-01
제증명 수수료	진단서	PDZ010001	건강진단서	1매	10,000	0	0			검사료 별도	2023-09-01
	진단서	PDZ070001	장애진단서(신체적 장애)	1매	15,000	0	0				2023-09-01
	사망진단서	PDZ030000	사망진단서	1매	10,000	0	0				2023-09-01
	사망진단서		영문사망진단서	1매	30,000	0	0				2025-04-01
	진단서	PDZ010000	일반진단서	1매	20,000	0	0				2023-09-01
	진단서	PDE010001	영문일반진단서	1매	20,000	0	0				2025-04-01
	상해진단서	PDZ020001	상해진단서(3주 미만)	1매	100,000	0	0				2023-09-01
	상해진단서	PDZ020002	상해진단서(3주 이상)	1매	150,000	0	0				2023-09-01
			의사소견서	1매	20,000	0	0				2023-09-01
	확인서	PDZ090002	입퇴원확인서	1매	3,000	0	0				2023-09-01
	진료기록 사본	PDZ110101	진료기록사본	1~5매	1,000	0	0				2023-09-01
		PDZ110102	진료기록사본	6매 이상	100	0	0			1매당	2023-09-01
	진료기록 영상	PDZ110004	진료기록영상CD	CD	10,000	0	0			1장당	2025-01-01
			장기요양소견서	100%	61,040	0	0				2025-01-01
		20%		12,200	0	0				2025-01-01	
	10%	6,100		0	0				2025-01-01		
검체검사료		코로나(PCR)검사	100/100	63,965	0	0			1회당	2025-01-01	
기타		보호자(상식)		5,000	0	0			1끼	2023-09-01	
		뉴케어	30ea	30,000	0	0				2023-09-01	
	기타	환의(상.하의)		60,000	0	0			1벌	2023-09-01	
	기타	대시트		40,000	0	0				2023-09-01	
소모품	기저귀	기저귀(특대)	9ea	7,800	0	0			pack	2023-09-01	
	기저귀	기저귀(대형)	10ea	6,100	0	0			pack	2023-09-01	
	기저귀	속기저귀	30ea	4,900	0	0			pack	2023-09-01	
	기타	모닝매트	10ea	3,000	0	0			pack	2023-09-01	
	기타	물티슈		2,500	0	0			pack	2023-09-01	
	기타	각티슈		2,500	0	0			1곽	2023-09-01	
	기타	비닐장갑	200ea	2,800	0	0			pack	2023-09-01	

의료법 제 45조에 따라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항목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.
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, 의료급여법 제 7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(비급여진료비용)은 다음과 같습니다.
 ▶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
 (예: 성형 또는 미용수술 등), 질병, 또는 부상의 직접 진료목적이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(처방, 주사 및 검사), 기타 건강보험급여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